

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옥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9년 2월 26일

○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7일

3. 제정이유

-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,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(안 제3조)
-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함(안 제5조)
-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(안 제6조)

-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,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정함(안 제7조)
-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안 제8조)
-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9조)
-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,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금번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첫째,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과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둘째,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정하였으며,

- 셋째,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금번 제정조례안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 등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조정 및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

○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홍보와 교육사업 추진 및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고 판단됨.

○ 다만, 본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예방과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시행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부. 끝.